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3월 18일,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9. 1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1.)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6. 3. 17.)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기헌의원)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u>세계평화</u>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한반도</u> 및 <u>세계평화</u> ----- -----.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9일 제정된 것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을 법률의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 시 한반도 평화 증진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한반도 평화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¹⁾

1) 현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통일희망 음악회, 통일캠프 개최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의 개념이 세계평화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한반도 평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의 역할을 확인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국제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의 의미가 있음.

참고로 현행 법률에서 한반도 평화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의 목적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²⁾ 이외에 「북한인권법」³⁾,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⁵⁾ 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북한인권법」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 건)

이기현의원 및 김성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